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6. . . (제 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4.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게 별정우체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질병휴직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의 사용권장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강등·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미지급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인력의 효율적 배치 운영(안 제11조의7 제2항 신설)

우편물량 감소 등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방우정청장이 별정우체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별정우체국 직원의 휴직제도 보완(안 제22조)

별정우체국 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가 사용 권장제도 도입(안 제27조의3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가 저축제도 도입(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까지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징계위원회 설치기관 등 조정(안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정우체국 직원(별정국장 포함)의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우정청(별정국장의 중·경징계 및 직원의 중징계) 및 총괄우체국(직원의 경징계)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지방우정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안 제38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미래창조과학부령 제 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제목을 “정원의 조정”에서 “정원 등의 조정”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초과현원을 조직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정우체국이 소속한 총괄우체국이나 그 소속 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이내로 한다”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후단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7조의3을 제27조의6으로 한다.

제2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를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의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준용 한다”로 한다.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를 각각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횡령·유용에”를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 등 요구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7(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7(정원 등의 조정) ① ----------.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초과현원을 조직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정우체국이 소속한 총괄우체국이나 그 소속 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휴직) ① ~ ② (생 략)	제22조(휴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한다. 2. ~ 3. (생 략)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5. (생 략) ④ (생 략) <신 설>	③ ----------. 1. ----------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4. ---------- 3년 ----------. <단서 삭제>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사

	혁신처장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3(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④ (생 략)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④ (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제36조(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장 또는 직원(직원의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직원(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총괄우체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각각 징계	제36조(징계)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 ---------- ---------- ---------- --------.
③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 ---------- ---------- ---------- ---------- ---------- ---------- ----------.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④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의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준용 한다.
제38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제38조(징계의 효력) ① -------- ---------- ----------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	----------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	② ---------- ---------- ---------- ---------- ---------- -----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없다.	⑤ ---------- ---------- ---------- ---------- ----------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8161